

소비자 자동차 보상 협회
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

소비자 공지

귀하가 (1) 공인 딜러 (또는 임대 소매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였거나, 귀하의 차량을 판매 목적으로 공인 딜러에게 위탁하고 (2) 딜러가 아래와 같은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2008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청구를 할 경우, 귀하는 ‘소비자 자동차 보호 기금’(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Fund)에서 보상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면허증이나 등록 수수료를 DMV에 전달하지 않음
- 귀하의 차량을 위탁 판매한 후에 합의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음
- 귀하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제공한 보상판매 차량(trade-in vehicle)에 대하여 합의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유치권 또는 기타 클레임이 청구되지 않은 선의의 소유권을 제공하십시오.
- 딜러를 통해 구매한 제 3자의 보험, 서비스 계약,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십시오.

본 신청서는 딜러 또는 임대 소매업체가 일반 대중에 대한 자동차 판매 또는 리스를 중단하거나 파산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 기한 이후 작성된 청구서는 지급 대상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청구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소비자 자동차 보호 기금 청구서’(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Fund Claim Form)를 작성한 후 청구내용에 필요한 증빙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서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작성한 청구서를 이메일로 보내지는 마십시오. 이메일로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